

『2021 대구광역시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 참 가 신 청 서

I. 제안명

아이디어 제목	
제안 요약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2줄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II. 신청자 현황

참가구분	☐ 직장인 (기업) ☐ 일반인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모두 기업에 해당, 그 외는 모두 일반 부문으로 체크 * 기업 소속이라도 개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일반인에 체크
참여분야	☐ 로봇 공정개선 및 응용 ☐ 서비스 로봇 기술 ☐ 로봇 비즈니스 모델 ☐ 타 산업 융합 ☐ 기타()
기업명/팀명	* 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기업명 또는 일반으로 참여하는 경우 팀명 작성
성명(대표자)	* 제안자 대표 1명만 기재
전 화 번 호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공모전 진행상황 안내 등 공지 용도)
보조 연락처	* 제안자 부재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선택)
E - mail	* 상시 연락 가능한 이메일(공모전 진행상황 안내 등 공지 용도)
보조 E - mail	* 이메일 오류를 방지하여 2곳 모두 발송(공모전 진행상황 안내 등 공지 용도)

Ⅱ-1. 참여인원 현황 (반드시 작성 **추후 팀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름	소속(기업명 또는 팀명)	직위 및 역할

참가서약서	본인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2021 대구광역시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1 대구광역시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3. 제출된 모든 서류(참가신청서, 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가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 대구광역시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재)대구테크노파크 귀하	

『2021 대구광역시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 평가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 / 별도 양식 사용 가능

1. 아이디어 개요

1-1) 아이디어 명 :  아이디어를 쉽게 나타내는 이름으로 작성

1-2)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내용을 간략히 소개(100자 내외)

1-3) 아이디어 핵심내용(요약)

 기획내용의 핵심내용을 700자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1-4)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우수성

 아이디어의 우수성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그림 또는 표 활용가능)

1-5) 아이디어의 독창성

 제안하는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서비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와 구별되는
독창성 및 차별화된 강점은?
(기술적 우위, 소비자의 효용가치 등을 중심으로 설명)

2. 아이디어 사업화

2-1) 아이디어의 사업성 및 실현 가능성

- ☞ 제안하는 아이디어 결과물의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결과물의 구현 및 실행, 수익 창출 구조 등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작성)

2-2) 아이디어 효과성(기대효과)

- ☞ 아이디어 결과물의 사회 파급(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도표, 이미지 등 활용 가능)

『2021 대구광역시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 이용약관

※ 특허청의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14.11.18)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3.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아이디어심사담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5.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②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갑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아이디어의 귀속]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제4조 [갑의 의무] ①갑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과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을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갑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한국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2. 한국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제6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 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을은 공모전에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2.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 경우에는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련된 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를 폐기한다.

②갑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자료의 반환을 을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제출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③2항에서 반환되는 자료가 물리적 형체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것으로 자료의 반환을 갈음할 수 있다.

④을은 공모전의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갑의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우선협상권] 을이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갑에 지급하는 경우, 을은 상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 아이디어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허락 또는 양도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가진다.

제10조 [사용권 허락]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사용권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 범위, 기간 등 사용권 허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수상된 것이며 사용 범위가 공모전 홍보, 당선작 전시 등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양도] 을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과 별도의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본 약관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갑과 을의 개별 합의를 거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제13조 [합의사항 이외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갑 : _____(개인 / 팀명과 참가자 대표 성명)

을 : (재)대구테크노파크 (공모전 개최기관)

※ 서명 후 캡처, 사진, 스캔하여 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

※ 대표자 1인이 대표하여 서명

[필수동의서 3]